

#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

## ( 이상 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632
----------	------

발의연월일 : 2015. 4. 9.  
발 의 자 :

의원( 인 )

주 문

- “불임과 같음”

제안이유

- 안산 폭발물 처리장은 수암봉 기슭인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5-7번지 일대에 1983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폭발물 처리장 인근에는 안산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적인 안산읍성, 청문당 및 원당사가 있고, 이 지역은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생하고 성장한 곳으로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
-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폭발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및 파편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폭발물 처리장을 끼고 있는 수리산의 생태 환경은 악화되었음.
-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안산 폭발물 처리장의 이전이 절실하나, 관련 기관인 국방부는 사실상

힘든 이전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한 안산시 및 경기도의 해결 노력은 매우 미온적임.

- 안산 폭발물 처리장으로 인한 76만 안산시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결정기관인 국방부에 이전 및 안산시 양여 결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 및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이전 부지 확보하여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현 폭발물 처리장 부지는 안산시에 양여할 것을 촉구함.
- 나. 안산시장은 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조속한 협의를 시작하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 다. 경기도가 나서서 협의를 조율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업무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 건의안 : 불임

#### □ 참고사항

- 송부처 :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안산시장

#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

안산 폭발물처리장은 1983년 6월 30일에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5-7번지 일대 수리산 수암봉 기슭에 약 33만여 m<sup>3</sup>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처리장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은 단원 김홍도의 고향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청문당은 조선후기 시·서·화의 삼절로 추앙받은 표암 강세황 선생과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이 태생하고 성장한 곳으로 안산의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돼 있다.

원당사는 표암 강세황 선생이 안산에서 뛰어난 절경 여덟 곳을 노래한 안산8경에 등장한다. 안산읍성 안에는 안산객사, 행궁이 복원되어 있다. 안산객사는 안산행궁으로 과거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능원으로 가는 길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한 안산 폭발물처리장은 소음과 진동은 물론 파편 까지 발생시키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03년에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제기로 지금은 화약과 탄약 등의 소각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2006년에 안산시는 국방부와 처리장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이전비용을 요구하면서 결국 이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처리장 인근 안산동 인구만 해도 10년 사이 3,000여 명이 증가했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거지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수리산 인근 수암동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불과 100m만 들어가도 폭발물처리장 펜스와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을 만나게 된다.

현재 소각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수시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폭발물 차량과 예고 없이 들리는 폭발소음은 주민들에게 여전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휴식공간이어야 할 인근의 등산로는 휴식은커녕 매일마다 불안을 일깨우고 있다.

피해는 인근주민만 받는 것이 아니다. 수리산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명산으로 주말이면 몇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도립공원으로까지 지정된 안산시의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정자원이다.

그러나 폭발물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남 성분의 유독물질이 그쪽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에서는 가재라든가 도룡뇽 같은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폭발물처리장이 생긴 후로는 그런 것이 전멸하였다.

힐링과 체험 중심의 관광산업이 지자체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그러나 안산시는 수리산 밀자락 계곡을 품어 안듯 끼고 있는 폭발물처리장 때문에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취조차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지금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안산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을 원천적으로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별도로 적정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리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부지개발 가능성성이 없어 이전을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 때문에 국방부가 요구하는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부담 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안산시는 30년 가까이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산이 부족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마치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나 다를 바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안산시의회와 76만 안산시민은 피해를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어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의 신속한 이전 및 양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주문한다.

1.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이전 부지 확보하여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현 폭발물 처리장 부지는 30년 이상 피해를 받은 안산 시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안산시에 양여하라.
1. 안산시장은 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1. 경기도가 나서서 협의를 조율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업무협약에 동참하라.

2015. 4.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